

참고로 본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
설치에 따른 예산은 지방양여금 배
정과 조세준칙 시달이 중앙에서부터
늦게 이루어졌기때문에 92년도 수정
예산안으로 편성 의회에 요구코자하
는 것입니다. 이상으로 제안설명을

마치겠습니다.

-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.
-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
- 전문위원 민귀식

<참 조>

忠清北道地方讓與金管理特別會計設置條例案

1. 提出者 : 忠清北道知事

2. 提出日字 및 回附日字

가. 提出 日字 : 1991년 12월 4일

나. 回附 日字 : 1991년 12월 5일

3. 提案理由

- 地方讓與金 對象事業을 效率的으로 推進하기 위하여 內務部에서 示達된 準則에 依據 忠清北道 地方讓與金管理特別會計를 設置 運營하기 위함.

4. 主要 骨子

가. 이 會計의 歲入은

- 地方 讓與金
- 一般會計 轉入金
- 移越金, 借入金 및 其他 收益金으로 함.

나. 이 會計의 歲出은

- 道路 整備 事業
- 農漁村地域 開發事業
- 水質汚染 防止事業
- 靑少年 育成事業에 限함.

5. 檢討 意見

忠清北道 地方讓與金管理特別會計設置 條例制定案을 檢討한 바

가. 地方讓與金法 第4條에 의한 地方讓與金 對象事業을 效率的으로 推進하기 위하여 忠清北道 地方讓與金管理特別會計를 設置運營하고자, 現行 地方讓與金法에서는 道路整備 事業에만 地方讓與金을 交付, 施行하여 왔었으나

나. 地方讓與金法이 1991년 12월 3일자로 改正됨으로써 道路整備事業外에 農漁村地域 開發事業과 水質汚染防止事業 및 靑少年育成事業 까지도 地方讓與金으로 統合管理 하도록 되어있는 바

다. 地方讓與金을 財源으로 하는 對象事業을 效率的으로 推進할수 있도록 忠清北道 地方讓與金管理特別會計設置 條例案을 承認하여 증이 妥當하다고 餉料됨.

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○ 위원장 김연권 수고 하셨습니다.

충청북도지방양여금 특별회계설치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이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

○ 박종기위원 박종기위원입니다.

여기에 대상사업의 제도개선에 한것 보니까 대상사업에서 먼저한 것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 시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다 빠졌어요?

○ 예산담당관 박남규 그렇습니다.

○ 박종기위원 그것이 빠져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, 내버려 두면 그것조차 하면 이 다음에 더 낮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있고, 다시 삼입된 것에는 청소년 육성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꼭 이런 특별회계까지 그것을 양여금에서 써야되는 이유가 있나요?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집행을 하면 안되는지……

○ 예산담당관 박남규 법을 개정하는 그 내용은 물론 입법자체가 행정입법이기때문에 아마 관계부처가 내